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1.

발의자 : 유상범 · 조배숙 · 박충권
주진우 · 송석준 · 장동혁
강선영 · 곽규택 · 엄태영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.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실명거래, 수의계약, 부정청탁, 금품수수,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를 감찰대상으로 함.

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,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측근뿐 아니라,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의 1급 상당 핵심요직에 대거 등용되었음. 그러나, 현행법은 감찰대상자를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, 오히려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지 못하는 맹점이 드러나고 있음

특히, 장관후보자 등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개입에 그치지 않고, 민

간단체 회장 인사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국민적 진실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 그럼에도 밀실인사를 비위행위로 간주해 감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감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찰대상을 확대하여, 문고리 실세의 자의적 인사개입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함으로써,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함(안 제2조제3호, 제6호 및 제5조제2호).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3.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

6. 인사개입 등 권한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

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대통령비서실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비위행위) 이 법에서 사용하는 “비위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1. • 2. (생 략) <u>3.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</u> 4. • 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비위행위) ----- ----- ----- -----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<u>3.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</u> 4. • 5. (현행과 같음) <u>6. 인사개입 등 권한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</u></p>
<p>제5조(감찰대상자)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(생 략) <u>2.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</u></p>	<p>제5조(감찰대상자)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<u>2. 대통령비서실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</u></p>